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어르신복지과)

「성북시니어클럽」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69
----------	----

제출년월일 : 2022. 1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어르신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인 「성북시니어클럽」을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시니어클럽 및 외부 사업장 4개소
- 위 치 : 성북구 안암로 79 (안암동 5가 104-148) 등
- 시설내용

구분	시설명	위치 및 면적	시설 용도	비고
1	성북시니어클럽	안암로 79, 1층 (66.12㎡)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2	시니어 동행 다듬이	월곡1동 경로당 2층 (오패산로3길 99, 99㎡)	쇼핑백 제조	외부 사업장
3	9988 공동 작업장1	월곡 갑을명가 215호 (화랑로11길 26, 65㎡)	쇼핑백 제조, 포장	
4	9988 공동 작업장2	석관1동 경로당 지하층 (한천로74길 1, 64㎡)	쇼핑백 제조, 포장	
5	장위 사업장	장위 어르신 행복지원센터 1층 (한천로 708, 235㎡)	일상생활지원센터 요리·자연노리 체험교실 커피정원 등	

나.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

다. 위탁방법 : 운영실적 평가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성북시니어클럽 관리·운영

- 지역 어르신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기능 및 역할 수행
-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
- 지역사회 내 어르신 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 수행

마. 신청자격 : 지역사회복지 및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3. 관련근거

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이하“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